

남양주시 고시 2025-353호

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취소 고시

남양주시 고시 제2025-128호(2025.04.10.)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된 와부읍 덕소리 483번지 일원 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대행개시결정 취소를 고시합니다.

2025. 8. 21.

남 양 주 시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사업종류 : 재개발정비사업
- 사업명칭 : 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법인명 :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
- 대표자 : 김 인 태
-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9번길11. 207호(선플렉스본관)

3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83번지 일원
- 면 적 : 19,439.00㎡

4. 사업대행개시결정 취소 내용

- 사업대행자 :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, 4층(삼성동, 아이콘 삼성)
- 개시결정일 : 2025. 04. 10.
- 개시결정 취소 고시일 : 2025. 08. 21.
- 취소 사유 :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의 과반수 동의(총회의결)에 따름